



# FTA 품목분류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

원용택 | 공항 신성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EREPORT

#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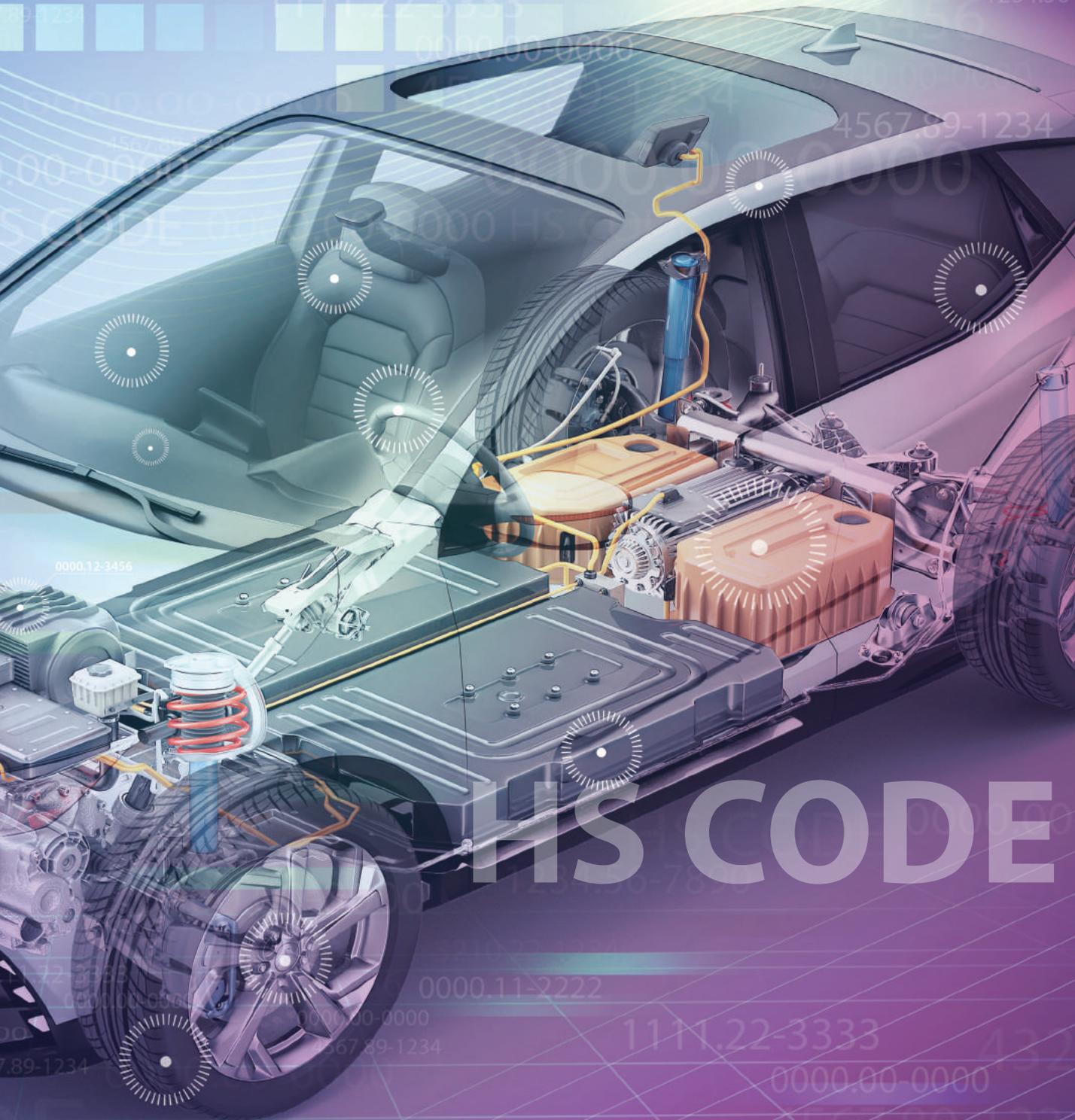


원용택  
공항 신성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FTA 시대에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품목분류 신청된 물품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왜곡되어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수입자는 추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상대국에서 세율 결정의 단초가 되거나 통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물품의 정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세관 검사직원들은 물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결정기관은 그 결과를 HS코드 체계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물품을 확정하고 제출된 물품설명서에 기재된 데이터의 완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특정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된다면 그 결정은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된 정합성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HS CODE

## 1 서론

정합성의 사전적 의미는 공리적인 논리체계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 즉 모순된 명제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성질이나 상태를 말한다.

정합성은 데이터의 완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연 또는 고의에 의한 데이터의 파괴, 변경, 또는 상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물리적 부품간의 상호 용량이 잘 맞아 전체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즉 자물쇠를 열려면 많은 열쇠 중에서 구멍에 딱 맞는 열쇠를 꽂아서 돌리면 문이 열리는 듯이 그 자물쇠의 구멍과 열쇠가 딱 들어맞는 것을 정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품목분류란 국가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국제 공통의 코드체계(HS협약,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명(Description)과 코드번호(Code number)를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특정물품의 코드번호가 결정되면 그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무역통계, 원산지확인, 수출입 제한사항 등이 결정되고, 특히 FTA가 활성화된 현재 결정된 HS 코드번호는 핵심 키 고리로 출발점이 된다.

물품의 HS 코드번호는 관세율 협상,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의 HS 코드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현재 발효된 21개 FTA는 각각의 협정별로 HS협약 개정내용 중 2007, 2012, 2017, 2022버전 중에서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물품의 코드번호 결정(이하 “품목분류”라 한다)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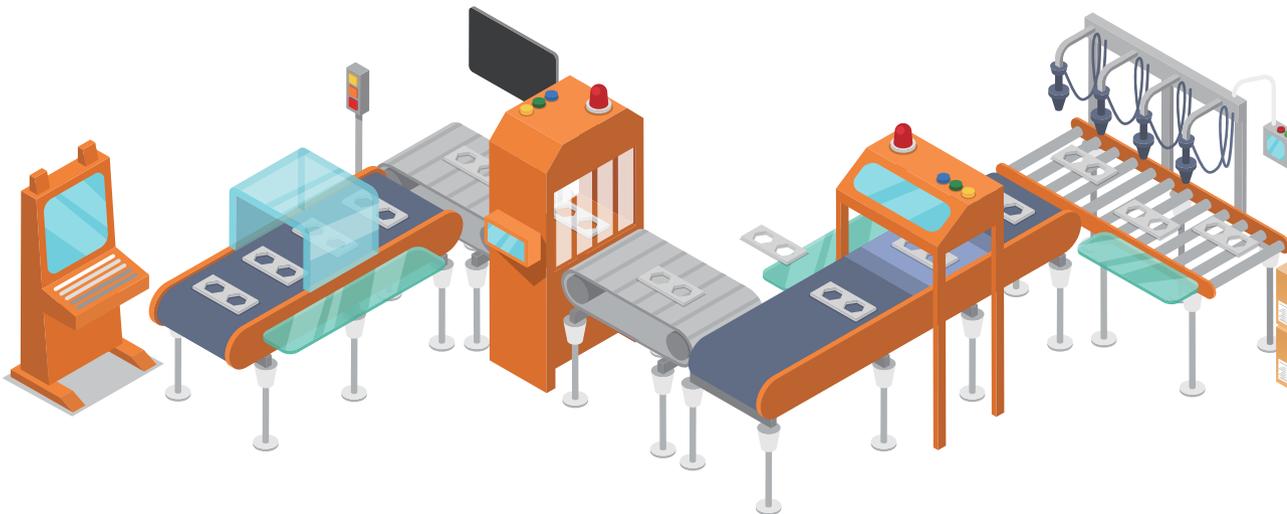
### 1. 품목분류의 처리 절차

#### 1) 개요

품목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제규범인 HS 협약이 있고, 국내법으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 고시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있으며, 관세청 고시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HS 품목분류 의견서가 있다.

대부분 물품이 HS 품목분류표상 2개 이상의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될 소지가 많고 품목분류표상 계기된 물품의 명칭이나 각주 내용은 명백하게 보이나, 각 나라의 문화나 관습 등에 따라 상품의 정의 설정이 다르고 국가별 관세율 적용 문제 등으로 서로 다른호에 분류할 수 있어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상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소호에 분류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이 있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원칙이 HS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그 물품이 단일물품인가, 복합물품인가 또는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품인가를 확인하여 물품의 품명과 성상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호, 소호에 계기된 품명의 범주에 해당되면 그 코드번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능, 주용도, 주요특성에 따라 코드번호를 검토해야 한다.



## 2) 품목분류의 신청

첫째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한 경우이다. 특정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받는 제도로써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세액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과 요건 미비 등의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법 제86조에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의 통지의무, 고시 또는 공표의무, 통지내용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의무,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 조성에 일관성이 없거나, 냉장 냉동 등 저장방법 및 운송수단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세관조사나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물품 등은 반려된다.

둘째로 화주가 민원서류로 질의한 것과 불복청구 심사나 소송과정에서 이를 심사하는 기관이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는 경우로써 주로 기존 품목분류 결정에 의문이 있거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물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등이 많다.

셋째로 세관으로부터 질의를 받아서 회신하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관과정에서 세율차가 큰 사전세액심사나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과세적부심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품목분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

우선 품목분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물품 파악의 과정을 거친다. 제시된 물품의 설명서 상 품명, 모델, 규격, 재료나 구성요소, 용도, 기능, 작동원리와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HS 품목분류표상의 적용할 품명의 범위(품목코드)를 확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흡한 사항이나 추가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문헌 조사,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물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것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음은 자물쇠에 대한 사항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시된 물품의 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통칙”과 “주”를 참고하여 열쇠가 들어갈 만한 2~3개의 품명(품목코드)을 우선 설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와 분류의견서 그리고 기존의 국내외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물품에 대한 쟁점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첫째로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동일·유사 품목 결정 사례가 있는 경우와 세율(환급액)차이가 없는 경우 등은 관세평가분류원 자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고, 타 기관(국세 심판원이나 법원 등)이나 세관에서 질의한 경우 등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는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둘째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를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과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품목 분류체계의 변경, 개별물품의 품목 분류 변경 또는 해설서 수정 등으로 인한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고시를 요하는 물품과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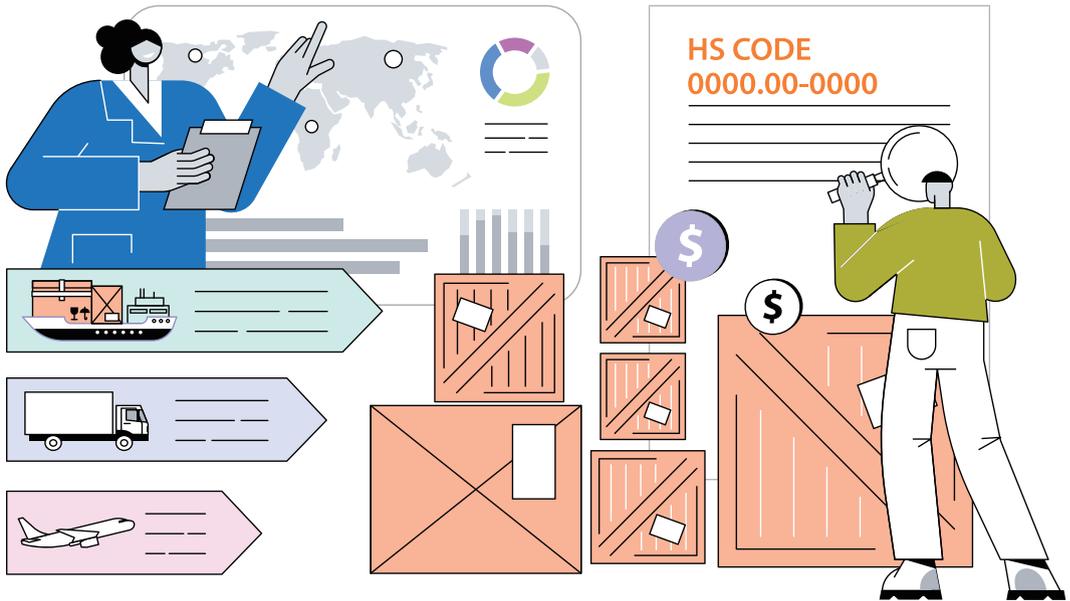
#### 4) 품목분류의 적용

이런 과정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신고인의 수출입신고시 물품의 신고항목 코드로 기재되어 관세율, 수출입제한여부, 원산지확인, 무역통계 등의 결정요소가 되는 것으로 신고인과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전심사 내용이 고시된 경우는 앞으로 신고할 물품에 대하여 관세관청이나 모든 신고인은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공문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과세과청과 사전 심사를 신청한 신청인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당해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사전심사의 내용이





3년이 경과한 경우와 제3자가 고시나 공문형태 등을 참조하여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유권해석, 질의회신한 경우 공문으로 통보되고 과세관청은 경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추징 또는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신청인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에 추가로 불복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을 해치는 원인

### 1) 물품의 파악의 어려움과 관세율의 차이

첫째는 과학의 발전과 IT 관련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기존 상품의 경우에도 현실에 맞춰 기능이 변화되는 등 물품이 복합화, 다 기능화됨에 따라 물품 파악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상품의 주기가 짧은 경우 신상품이 출현하면 외형이 유사하여도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농산물은 혼합비율이나 가공단계별, 축·수산물은 가공이나 보관상태별로 그리고 IT 제품 등 첨단 신상품은 기본세율과 양허세율 간의 차이가 있으며,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별 또는 원산지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 2) 신청자들의 의식

첫째는 대부분의 화주들이 수입신고시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일부는 사전 심사 신청시 경합 품목분류 중 저세율 쪽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물품 설명서의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유사물품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비용을 절약(절세)하려는 경향이 있고, 둘째는 반복 수입하는 경우 중간에 품목분류가 잘못 신고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일괄 추징을 하게 되고 고액을 추징을 당한 업체는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으므로 불복청구 등 민원마찰의 원인이 된다.

### 3) 결정과정상 발생사항

첫째는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직원들이 물품 파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등이 필요하나, 서면이나 사진만으로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 주어진 자료와 인터넷이나 통화로만 확인을 하고, 인력부족이나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현장이나 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들과의 면담 등 대면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는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서도 방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인사이동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근속자 배치를 고려해볼 일이다.





### 3.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1) 업체측

인터넷의 발달로 물품 정보를 수시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는 내가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과 신고시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절세를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수출입신고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나 질의회신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이나 질의회신시 물품설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제시된 물품의 품명(거래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하며, 모델, 규격, 재료나 구성요소, 용도, 기능, 작동원리와 제조공정 등의 데이터와 제출서류와의 연결도 명확(사례: 붙임)하게 표시해 주어야 한다.

신상품의 경우 물품 설명서의 제조공정 등 일부 데이터는 수출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자의 생산기술 노하우 유출을 우려하여 제조공정 등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품목분류에 전문성이 있는 관세사의 상담을 받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HS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동종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정보를 확인하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2) 품목분류 결정기관 및 과세당국(세관)

물품을 심사하는 직원과 품목분류 결정직원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농수축산물과 같이 유사물품간 세율차가 큰 물품이나 품목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은 5년마다 개정되는 HS 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기준을 명료화하는 등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품을 심사하는 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직원과 협업검사 센터 직원들에게 제시된 물품의 설명서상 데이터인 거래품명, 재료나 구성요소, 용도, 기능, 작동원리와 제조공정 등 작성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제출된 서류와의 연계성을 확인시키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문헌조사,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품명의 범위를 확정하여 결정기관에 제시토록 한다.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관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장기 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결과 제시한 품명 범위 중 HS 품목 분류표에 계기된 호, 소호 중 2~3개의 쟁점으로 좁혀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율표 해설서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인이 아닌 집단토론을 통해 복수로 결정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청자가 물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추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와 직원들이 신청자(업체 또는 관세사)와 유착되어 품목분류 결정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동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불성실 신청자들을 별도 관리하는 등 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은 과거 5년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적용하여 추징하거나 환급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신고된 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과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의 보관, 반환,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결론

FTA 시대에는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품목분류 신청된 물품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왜곡되어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수입자는 추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상대국에서 세율 결정의 단초가 되거나 통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정물품의 품목분류 신청자는 물품의 정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세관의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직원들은 물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결정기관은 그 결과를 HS코드 체계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품목분류 결정기관은 신청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물품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엄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품목분류 결정에 오류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이를 활용하는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심판원의 심판이나 소송과정에서 보면 품목분류 결정은 행정법상 확인적 행정행위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대외무역법이나 FTA특례법 등 관세법 이외의 법 적용시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제시된 물품을 확정하고 제출된 물품설명서에 기재된 데이터의 완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특정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된다면 그 결정은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된 정합성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품목분류의 신청 사례

※ 이 물품설명서는 검토자가 신청물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물품설명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 기계류 작성 예시

## 물품설명서

###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 USB DATA CABLE OR USB CHARGER FOR MOBILE PHONE
- 모델명 : NX-000XXA

### 2. 구조 및 형태

- 물품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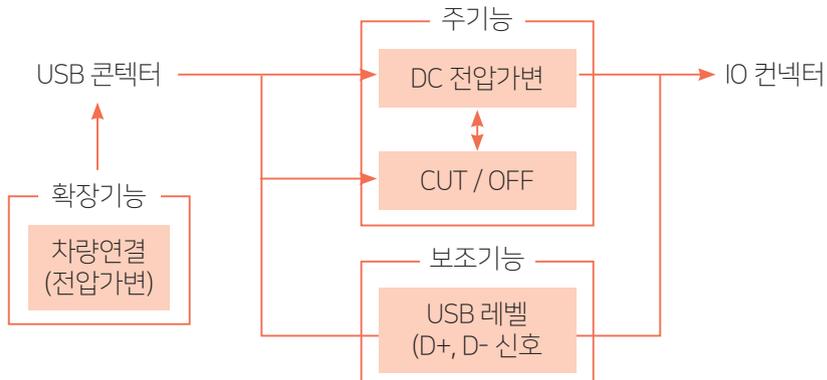


• 요소 및 기능

- ① USB 콘택터 : 컴퓨터의 USB PORT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 ② 전원공급 확장케이블 : USB PORT를 통하여 들어온 전원을 핸드폰에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 ③ PWB B/D : IO 컨넥터 내부에 장착되는 PCB BOARD(충전 IC, 저항, 콘덴서)
- ④ IO 컨넥터 : 휴대폰과 연결하는 단자
- ⑤ 시가잭 : 차량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때 연결하는 단자

• 블럭다이어그램(흐름도)

주 : 블럭다이어그램은 제품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물품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 내부구성 요소 등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와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합니다.



• 재질

구 분	재질
케이블	SR-PVC, TINNED STRANDED COPPER
USB	니켈, 구리, 주석
IO 컨넥터	PC

3. 기능 및 용도

• 기능

- 컴퓨터의 USB PORT에 접속과 동시에 DC 5V가 공급된다.
- IO 컨넥터 내부의 반도체가 DC 5V의 전원을 DC 4.2V로 가변시켜 휴대폰에 공급한다.

- 이때 최대 충전전류는 IO 커넥터 내부에 전류를 조정하여 500mA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충전시에는 적색 점등 상태에서만 충전시 적색 점등이 꺼지며 녹색 점등 상태로 변화하고, 휴대폰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CUT/OFF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 또한, USB PORT를 통하여 들어온 D+, D- 신호를 받아들여 데이터 교류가 가능토록 휴대폰과 컴퓨터 간의 링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 • 용도

##### ① 핸드폰 충전

휴대폰의 배터리 방전시 사무실이나 차량에서 USB PORT를 통하여 외부전원 DC 5V의 전원을 받아 DC 4.2V로 전압 변환 후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

##### ② 핸드폰과 컴퓨터간의 상호 DATA 교환

휴대폰과 컴퓨터 간의 데이터 교류 가능토록 연결하는 기능

#### 4. 제조공정

- CABLE 몰딩공정 : USB PORT와 CABLE간 연결 및 고정하는 공정
- PCB SMT 공정 : PCB에 SMD 반도체를 자동으로 ASS'Y하는 공정
- PCB ASS'Y CUTTING 공정 : PWB BOARD를 각각으로 잘라내는 공정
- IO 커넥터 삽입공정 : PWB BOARD에 IO 커넥터를 고정하는 공정
- IO 납땜 공정 : 고정된 IO 커넥터를 납땜하는 공정
- CABLE 납땜 공정 : PWB BOARD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정
- CASE 조립공정 : IO 커넥터를 조립하는 공정

#### 5. 제출서류목록

1. 사진 4매(전체, USB 콘텍터, IO 커넥터, 시가잭)
2. 제조자 카달로그 1부. 끝.

####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8504.40-3010

주: 사진은 물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현품이나 카달로그에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